

## 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녀차이

김 범 준<sup>†</sup>

최 승 혁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범죄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처벌 기준들이 양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양형결정에 미치는 처벌 기준들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2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력범죄(살인, 폭행, 유괴)와 재산범죄(절도, 사기, 재물손괴)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가치적 기준과 처벌 목적과 관련된 기준 즉, 진화적 기준, 도덕적 기준, 법률적 기준, 그리고 응보적 기준에서의 판단과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여할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범죄에 대해 진화적 기준, 도덕적 기준, 그리고 응보적 기준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형 판단에서는 남녀차이가 없었다.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적 기준들과 응보 요인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남녀 모두 응보적 기준이 유의미한 설명 변수이었다. 다만, 여자들은 여기에 더해 강력범죄의 경우, 도덕적 기준 역시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나타나 성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주제어 : 양형판단의 성차, 처벌기준, 처벌철학, 성차, 양형

---

<sup>†</sup> 교신저자 : 김범준, 경기대학교 교양과,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6-5  
Tel: 031-249-9193, E-mail: bjkim@kyonggi.ac.kr

범죄란 하도록 요구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Haskell & Yablonsky, 1983).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함은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과 유책(有責)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이윤호, 2002). 관습법적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성문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에는 원인이 있고, 그 행위의 이유는 행위자와 그 행위를 둘러싼 환경에 존재한다. 범죄 역시 그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 역시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범죄 행위를 일으킨 사람 즉, 가해자(피의자)인 범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이 같은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상 처벌이라고 한다. 보다 법률적 용어를 빌리자면, 양형(sentencing)이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즉, 양형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만이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사법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가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흔히 배심제로 불리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재판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범죄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법률 조문에 근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영향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현재까지 시행되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노력 중의 하나로 최근 양형위원회에서는 2009년까지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처벌 즉, 양형기준의 제공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불신 풍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문성우, 2007; 최석운, 2007). 양형기준의 제공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전술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시행과 관련된다. 국민참여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국민들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고 이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만약 서로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양형기준이 없다면, 배심원들 각각의 개인차로 인해 양형의견에 큰 차이가 나게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문성우,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즉,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죄에 대한 가치적 판단과 처벌의 목적(응보)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처벌 판단의 기준(처벌 철학)

과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나 처벌 철학이나 목적, 기준에 의한 처벌판단에 관한 연구들은 심리학자나 법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고재홍, 1991, 1994, 1995, 1996; 고재홍, 백상철, 1994; 김범준, 2007; 김지현, 1992; 박은영, 2007; 손철우, 2008; 이재상, 1994; 이천현, 2007; 황인

정, 2007; Carlsmith, 2006; Carlsmith, Darley, & Robinson, 2002; Darley, Carlsmith, & Robinson, 2000; McFatter, 1978, 1982; Streng, F., 1994).

이 연구들에 따르면, 처벌은 단순한 법률적 조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의라거나 공평한 것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란 그 사회에 공존하는 철학, 윤리, 가치관, 합법성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McFatter, 1978). 실제로 캐나다의 양형에 대한 실제 사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태도나 철학 등을 조사한 Hogarth (1971)의 연구에 따르면, 양형에 차이를 주는 중요한 요인은 처벌에 대한 철학(penal philosophy) - 일종의 양형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법칙 혹은 전략 -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처벌은 처벌에 대한 철학적 관점, 다시 말해서 처벌과 관련된 기준(criterion)들이 양형을 결정하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들 처벌 철학은 처벌 전략 혹은 처벌 목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형벌이론에 기초해 보면 크게 응보주의(retribution)와 공리주의(utility), 즉, 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응보란 범죄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말한다. 이에 반해, 억제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이 법의 위하력(威嚇力)을 느끼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거나, 범죄자의 격리를 통해 범죄자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것 등을 말한다.

물론 이 같은 일반적 구분보다 더 세분화된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Greenberg와 Ruback(1982)은 범죄자 처벌의 목적으로 7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즉, 먼저 범죄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당연한,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응보(retribution)이다. 두 번째는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인데,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이 처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특별억제(individual deterrence)이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그 범죄자가 미래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력화(incapacitation)가 있다. 이것은 범죄자를 수감시킴으로써 더 이상 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처벌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결과로 느낀 좌절감이나 상처, 분노 등으로부터 카타르시스와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도덕적 분개(moral outrage)와 처벌의 목적이 범죄자로 하여금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등을 바꾸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다는 사회복귀(rehabilitation)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회복 restitution)이 있다.

이 같은 세분화 역시 크게 보면, 둘로 구분할 수 있다. Kaplan(1996)은 이상의 7가지 처벌 목적은 결국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는 7가지 목적을 응보와 공리주의의 틀 속에서 통합하였다. 즉, 7가지 처벌 목적 중 응보와 도덕적 분개는 응보적인 측면의 처벌로, 나머지 5가지는 공리주의적인 측면의 처벌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처벌의 목적 즉, 처벌 기준 중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응보이다 (Carlsmith, 2006; Carlsmith, Darley, & Robinson, 2002; Darley, Carlsmith, & Robinson, 2000; McFatter, 1978, 1982). 이에 응보의 기원과 철학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보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복수인데, 형법의

초기시대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복수시대는 유사(有史) 이래 중세까지를 가리키며, 이는 두 가지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고대에 행해졌던 결투인데, 이는 불법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명 대 생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것인데 이는 범죄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형벌을 반영한 것으로서 탈리오 법칙(*lex talionis*),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의 사상인 것이다. 이는 유대-기독교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다(정영일, 2003; Newman, 1985, 1997).

형벌의 목적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다는 생각은 I. Kant가 주장한 것인데, 그는 인간이 항상 주체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객체로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응보로서의 형벌의 내용은 범죄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해악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동해보복론을 주장했다(이천현, 2007; 정영일, 2003). Kant는 동해보복론(同害報復論)을 주장하며 절대적 형벌론의 입장을 취했는데 반해, Kant와 함께 응보형주의의 대표적 주장자인 Hegel은 형벌이 범죄인에 대해서 갖는 의미나 가치가 범죄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해악과 같으면 된다고 보는 동가치응보론(同價値應報論)을 제시하였다(정영일, 2003). 이와 같이 응보적 판단은 불법적인 행위는 그 불법적인 행위만큼 무거운 형벌에 의해 다시 보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가정에 근거를 둔 처벌판단이다.

이 같은 철학적 근거와 더불어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응보가 가장 보편적인 처벌 기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먼저, McFatter(1978)는 줌도둑질, 폭행, 차절도, 사기, 위조, 도둑질, 강도, 과실치사, 강간, 살인 등 10가지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 결

정에 있어서 응보, 사회복지, 억제 등의 처벌 철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 응보 조건의 피험자들이 처벌 기준을 제시받지 않은 통제조건의 피험자들과 양형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응보가 가장 근본적인 처벌철학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McFatter(1982)는 보다 처벌 기준을 늘려서 또 다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처벌의 목적 즉 기준을 무력화, 응보, 사회복지, 일반억제, 특별억제로 상징하고 대학생들과 지법판사들에게 폭행, 차절도, 강간, 살인 등 4가지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처벌의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서도 역시 응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처벌의 목적 즉, 처벌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Darley 등(2000)은 사소한 절도, 중한 절도, 폭행, 살인, 암살 사건을 대상으로 무력화와 응보를 처벌의 동기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소들을 변화시켜 양형을 판단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응보관련요소인 범죄의 심각성의 조작에 양형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응보가 근본적인 처벌 동기임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Carlsmith(2006) 역시 응보와 억제, 무력화 관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형량이 응보요소들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히 처벌에 대한 철학적 시각 즉, 처벌의 목적과 관련된 기준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의 목적만이 아니라 범죄를 바라보는 철학적이고 가치적인 판단기준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즉,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적 기준으로는 최근 인간의 다양한 행위

를 설명하고자하는 진화적 기준, 법 상위의 개념에 해당하는 도덕적 기준,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법률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화적 기준이란 자연세계를 식량이나 영역, 또는 짝짓기로 인한 중간 혹은 종내의 갈등 즉, 약육강식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보는 것이다. 모두가 주지하는 것처럼 Charles Darwin에서 비롯된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인간 역시 종족보존을 위해 무한한 자연내의 생존경쟁에 놓여 있어, 종의 생존과 번식에 유용한 것은 보존된다는 자연선택, 즉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Darwin, 1859, 1987).

또한 Hebert Spencer의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는 생존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인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진화의 힘은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에서 거역할 수 없는 원리라고 보았다(Goodwin, 1999, 2005). 이 같은 맥락에서 Newman(1985, 1997)은 처벌 역시 진화적 산물로 보았다. 즉, 처벌이 사회적 세계는 물론 물리적 세계와 관련하고 있는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초적으로 볼 때, 인간이 대처해야 하는 거친 자연환경을 형벌의 자연적 기원 중 하나로 보았다. 이렇듯 진화적 기준은 인간세계가 자연세계와 같이 약육강식과 생존투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판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덕적 기준과 법률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은 사회질서의 최후수단으로서 법적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질서는 오로지 법률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회적 질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법과 더불어 전통적 관습이나 도덕에 의해서 유지된다. 즉, 우리 사회를 규제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규제하는 관습이나 도덕이며, 제한적으로 법률의 힘이라는 것이다(전병재, 1996).

같은 맥락에서 형벌 또한 범죄를 통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에 불과하다. 결국 처벌은 적합한 법적 목적을 충족하면서도 도덕적 가치 또는 실용적 관점 등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손철우, 2008). 따라서 도덕은 법의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법 효력의 기초가 되고, 법과 도덕은 서로 지지하고 도덕에 기초를 둔 법률만이 사회적으로 생명과 권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최종고, 2005).

도덕의 힘은 우리가 사회제도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도덕적 규칙은 일정하게 절대적 힘을 가지며,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하게 한다. 즉, 도덕은 우리 일상에 보편타당한 규범이 된다. 이것은 도덕적인 위반이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적 관행과 관계없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Lapsley, 2000). 이와 같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법률의 기초를 이루고, 인간의 보편타당한 원칙을 반영하는 기본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형법이다. 형법은 사회통제를 시행하고, 범죄행위와 비행을 제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등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적 해악을 막으려고 하는 목적을 수행한다(Siegel, 2007). 실제로 형법상 처벌은 응보적 요구 뿐만 아니라 개선과 교육을 확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본보기나 범죄자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법철학적 의미에서 보면 처벌의 목적 중 공리주의의 철학과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이라 함은 공리주의적 처벌 기준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김범준(2007)은 이 같은 처벌판단 기준과 양형의 문제를 강간사건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강간범죄를 매우 부적절하며,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정(2007) 또한 이 같은 범죄 자체에 대한 가치적 기준과 양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대표적인 범죄(살인, 폭행, 강간, 그리고 방화치상)에 관한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 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가치적 기준의 하나인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동물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된 진화적 기준과 법률적 기준에 대한 판단과 양형 판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강력범죄들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엄격한 진화적 기준과 법률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벌 기준과 양형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응보적 기준과 약육강식 같은 진화적 기준이 양형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강력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유형만을 다루고 있어 그 설명이 보다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성차의 문제

범죄에 대한 판단에서 성차 연구는 성 역할(Bowker, 1978; Garofalo, 1977), 공정한 세상에 대한 가설(Drout & Gaertner, 1994), 기사도나 온정주의(Moulds, 1978)의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범죄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남녀간의 차이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은경(2003)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성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신체적 취약성과 특정범죄에 대한 취약성에서 찾고 있다. 신체적 취약성과 관련된 두려움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 수단 부족이나 통제의 상실, 결과의 심각성 등이 바로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Maxfield, 1984).

또 다른 설명 틀은 특정범죄의 취약성인데성과 관련된 범죄 등에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대상이 여성이다. 예를 들어 성 범죄의 경우, 피해여성들이 대항 능력이 거의 없어 취약하며, 그 피해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조은경(2003)은 이 같은 두 가지 설명 틀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택시 강도, 불량배의 폭행, 납치/인신매매, 주거 침입 절도, 소매치기 등에서 신체적으로 다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롭게 형벌의 목적 이론에 근거한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과 성차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김범준(2007)은 성의 영향이 뚜렷한 강간을 대상으로 처벌기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더 무거운 양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정(2007)은 살인, 폭행, 방화와 같은 보다 다양한 강력 사건을 대상으로 처벌 기준과

양형 판단에 관한 성차를 살펴보았다. 그는 기존의 형벌이론에 기초한 응보적 기준과 진화적 기준, 법률적 기준과 양형에 대한 판단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악육강식적 판단, 즉 힘의 논리의 정당성을 덜 인정하였고, 인과응보적 응징을 더 선호하며 더 많은 양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이 같은 처벌 기준과 양형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황인정(2007)과 김범준(2007)의 연구들은 형벌의 목적 이론에 근거한 응보적 판단이나 사회복귀적 판단에 더해 새로운 처벌 판단에 대한 물음을 던졌고, 또한 과거 처벌판단의 요인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차의 영향을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양형의 문제를 단순한 처벌 목적과 관련된 기준인 응보의 차원에 더해 범죄 자체에 대한 판단 즉, 진화적 기준, 도덕적 기준, 그리고 법률적 기준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처벌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범죄인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처벌 기준과 양형판단이 어떻게 다르며, 이 같은 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같은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남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 방 법

### 참가자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경기도 소재 H 대학교와 K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230명(남자: 114명, 여자: 116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18세에서 30세로 평균 22.10세이었다.

### 절차

자료수집은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수업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모두 6개의 사건이 제시되었다. 사건의 제시 순서는 남여 모두에게 동일하였다. 먼저 연령과 성별에 대한 응답을 받고 3개의 강력범죄와 3개의 재산범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범죄의 가해자는 남성으로 명시(5개 사건)하거나 중립적 표현(1개 사건: A씨)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알아보고자하는 것이라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참가 학생들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설문이나 연구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자료 수집을 마쳤다.

### 설문내용

#### 범죄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죄 사건은 범죄백서(2006) 중 주요 사건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하였다.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폭행’, 그리고 ‘유괴’ 범죄를 선정하였다. 대표적 강력범죄의 하나인 ‘강간’은 기존 연구들에서 성차효과가 명확하여 제외시

켰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죄를 선정하였다. 사건 내용 중 ‘살인’과 ‘폭행’은 황인정(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건내용을 사용하였다. 다른 4개 사건은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사건과 관련된 최소의 내용만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40대 초반의 사업에 실패한 남성이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아이를 납치하여 계속적으로 아이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난지 3주일이 지나도 아이의 생사는 모르고 있으며, 범인도 검거되지 않고 있다. 유괴범에게 아직 돈은 주지 않았다. 지금도 범인은 협박 전화를 해 오고 있다(유괴).

3개월 전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30대 후반의 남성이 생활비에 보태 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전에 다니던 직장에 몰래 침입하여 1억 4천만원의 현금을 훔쳤다. 그런데 그 직장의 재정 상태는 5억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곧 폐업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절도).

####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제시된 각 범죄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다양한 처벌에 대한 기준들을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과 관련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 진화적 기준에 따른 판단. 황인정(2007)의

연구에서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법칙에 대한 가치 차원에서의 평가’라고 보았으며, 김범준(2007)의 연구에서는 행위의 적절성 판단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이 같이 명명하였다. 이를 위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법칙이 있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각 사건들에서 보여준 행동이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1) 매우 적절한 행동이다 - (9)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도덕적 기준에 따른 판단.** 인간의 독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차원은 도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범죄가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덕과 범죄 사실은 상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도덕적 기준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도덕적 기준에 대한 판단은 김범준(2007)이 사용했던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위 사례를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당신의 판단은?”이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1) 매우 도덕적인 행동이다 - (9) 매우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법률적 기준에 따른 판단.** 법률적 기준에 따른 판단은 황인정(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률적 차원에서 제시된 범죄사건의 행동들이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9점 척도 상(1) 전혀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 (9) 매우 처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응보(應報)적 기준에 따른 판단.** 응보적 판단은 황인정(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인과응보적 차원에서의 판단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제시된 사건과 같은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그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9점 척도(1) 전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 - (9) 매우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양형 판단.**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양형을 부과해야 하는가를 년단위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사건에 대한 양형판단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존재하면 (혹은 하지 않는다면) 양형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있어 성차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구체적 목적을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양형의 정도와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과분석은 개별 사건이 아닌 전체 범죄, 강력 범죄, 그리고 재산 범죄의 유형에 따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개별 사건 분석을 제외시킨 것은 전반적 분석이 보다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양형과 처벌 기준의 수준

### 전체 사건과 범죄유형별

먼저 전체 사건의 양형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을 보면, 진화적 기준에서, 약육강식과 같은 힘의 논리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으며(7.09), 도덕적 기준에서, 매우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였다(8.00). 또한 법률적으로 상당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7.72), 응보적 기준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상당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6.89). 그리고 양형의 경우<sup>1)</sup>에는 전체 평균이 8.89년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판단을 범죄별로 살펴보았다. 강력 범죄의 경우, 진화적 기준에서 7.12, 도덕적 기준에서 7.95, 법률적 기준에서 7.63, 그리고 응보적 기준에서 6.86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역시 진화적 기준에서 7.05, 도덕적 기준에서 8.06, 법률적 기준에서 7.80, 응보적 기준에서 6.94를 나타내 두 종류의 범죄 역시 약육강식이라는 진화적 논리로 정당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며,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고, 법률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응보적 기준에서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판단의 정도에 있어서 두 범죄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도덕적 기준과 법률적 기준에서 강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도덕적:  $t(227) = -1.99, p < .05$ ; 법률적:  $t(227) = -2.53, p < .05$ . 이 같은 결과는 재산범죄로 제시된 사건이 절도,

1) 양형의 경우 최대값을 50년으로 하였다.

표 1. 양형과 처벌기준에 대한 판단정도의 평균

구 분	강력범죄	재산범죄	전체
진화적	7.12(1.60)	7.05(1.80)	7.09(1.55)
도덕적	7.95(0.80)	8.06(0.93)	8.00(0.74)
법률적	7.63(0.78)	7.80(0.96)	7.72(0.72)
응보적	6.86(1.10)	6.94(1.27)	6.89(1.07)
양 형	11.54(7.58)	6.24(4.69)	8.89(5.33)

( )은 표준편차임.

사기, 재물손괴로서 그 행위 자체가 다른 범죄에 비해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분류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이거나 화이트 범죄에 가까워 도덕적으로 쉽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범죄보다 강력범죄가 더 심각한 범죄라고 볼 때, 의외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진화적 기준과 응보적 기준의 판단에서는 두 유형의 범죄에 대한 판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진화적:  $t(227) = .94, p = .349$ ; 응보적:  $t(227) = -1.12, p = .264$ . 그리고 양형의 경우에는 강력범죄의 경우에 평균양형이 11.54년이었으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6.24년으로 나타나 재산범죄에 비해 강력범죄를 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227) = 10.78, p < .001$ .

### 남여 차이

성별에 따라 사건에 대한 양형과 처벌기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이하 표 2 참조).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진화적 기준의 경우, 남자들(6.77)에 비해 여자들(7.41)이 범죄에 대해 약육강식과 같은 진화적 논리로 정당화하기에는 더 적절하지 않은 행

동으로 보고 있었다,  $t(204.44) = -3.27, p < .001$ . 도덕적 기준에서도 역시 남자들(7.90)에 비해 여자들(8.11)이 범죄가 더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6) = -2.16, p < .05$ . 또한, 응보적 기준에서도 남자들(6.73)에 비해 여자들(7.05)이 범죄에 대한 응보적 차원에서 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t(216.22) = -2.29, p < .05$ . 그러나 법률적 기준에서는 남여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6) = -1.53, p = .127$ . 이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김범준, 2007; 황인정, 2007)와 같은 결과로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가치적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양형의 경우에는 남자들의 평균 형량이 8.59년인 것에 반해 여자들의 평균 형량이 9.20년으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높은 양형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양형에서의 성차는 발견할 수 없었다,  $t(206) = -.82, p = .413$ .

성별에 따른 범죄사건에 대한 양형과 처벌기준에 대한 판단이 범죄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이하 표 3 참조). 먼

표 2. 성별에 따른 양형과 처벌기준에 대한 판단정도의 평균(전체)

구 분	남자	여자
진화적	6.77(1.73)	7.41(1.26)
도덕적	7.90(0.68)	8.11(0.78)
법률적	7.64(0.69)	7.79(0.75)
응보적	6.73(1.16)	7.05(0.95)
양 형	8.59(5.69)	9.20(4.93)

( )은 표준편차임.

저 강력범죄의 경우, 진화적 기준에서 볼 때, 남자들(6.78)에 비해 여자들(7.45)이 범죄에 대해 약육강식과 같은 진화적 논리로 정당화하기에는 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었다,  $t(208.44) = -3.22, p < .001$ . 도덕적 기준에서도 역시 남자들(7.78)에 비해 여자들(8.10)이 강력범죄가 더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7) = -3.12, p < .01$ . 또한, 응보적 기준에서도 남자들(6.62)에 비해 여자들(7.08)이 강력범죄에 대한 응보적 차원에서 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t(217.62) = -3.22, p < .001$ . 그러나 법률적 기준에서는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의 경향성만을 보였다,  $t(227) = -1.87, p = .06$ . 이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김범준, 2007; 황인정, 2007)와 같고, 앞에서 살펴본 전체 범죄의 결과와 같은 경우로 역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가치적 기준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양형의 경우 역시 전체 범죄와 같이 남자들의 평균 형량이 11.27년인 것에 반해 여자들의 평균 형량이 11.80년으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높은 양형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양형에서의 성차는 발견할 수 없었다,  $t(216) = -.52, p = .604$ .

다음으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강력범죄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이하 표 4 참조). 진화적 기준에서는, 남자들(6.75)에 비해 여자들(7.35)이 약육강식과 같은 진화적 논리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기에는 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었다,  $t(209.42) = -2.53, p < .05$ . 그러나 도덕적 기준(남자: 8.01, 여자: 8.11)과 법률적 기준(남자: 7.75, 여자: 7.85), 그리고 응보적 기준(남자: 6.84, 여자: 7.02) 모두에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엄격한 처벌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성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덕적 기준:  $t(227) = -.78, p = .436$ ; 법률적 기준:  $t(227) = -.81, p = .417$ ; 응보적 기준:  $t(227) = -1.04, p = .297$ . 그리고 양형 역시 강력 범죄와 같이 남자들의 평균 형량이 6.09년인 것에 비해 여자들의 평균 형량이 6.39년으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높은 양형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양형에서의 성차는 발견할 수 없었다,  $t(217) = -.47, p = .637$ .

표 3. 성별에 따른 양형과 처벌기준에 대한 판단 정도의 평균(강력범죄)

구 분	남자	여자
진화적	6.78(1.77)	7.45(1.34)
도덕적	7.78(0.75)	8.10(0.89)
법률적	7.54(0.73)	7.73(0.81)
응보적	6.62(1.18)	7.08(0.98)
양 형	11.27(8.11)	11.80(7.06)

( )은 표준편차임.

표 4. 성별에 따른 양형과 처벌기준에 대한 판단 정도의 평균(재산범죄)

구 분	남자	여자
진화적	6.75(2.02)	7.35(1.51)
도덕적	8.01(0.88)	8.11(0.97)
법률적	7.75(0.95)	7.85(0.98)
응보적	6.84(1.35)	7.02(1.18)
양 형	6.09(5.04)	6.39(4.32)

( )은 표준편차임.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범죄에 대해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처벌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가치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전반적 경향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 부과 정도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연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결과인데, 양형은 차이가 없지만,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 처벌적 가치 기준들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남녀간에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그 메카니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 기준들**

**전체 범죄와 범죄유형별**

먼저 전체 사건의 경우, 양형판단에 있어서 처벌과 관련된 4가지 기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4가지 기준 중 어떤 기준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다중공선성 검증의 계수로는 VIF 계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변수인 응보적 기준이 1.000이었으며, 진화적 기준이 1.073, 도덕적 기준이 1.187, 그리고 법률적 기준이 1.409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5.000보다 적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응답자들의 양형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은 ‘응보적 처벌 기준’ 뿐이었다,  $R^2 = .10, F(1, 205) = 22.78, p < .001$ .

표 5.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결과

사건구분	독립변수	$\beta$	$R^2$	t 값
강력범죄	응보	.32	.10	4.91***
재산범죄	응보	.29	.08	4.43***
전체	응보	.32	.10	4.77***

\*\*\*  $p < .001$

즉,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양형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범죄 유형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강력 범죄나 재산범죄 모두에서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보적 처벌 기준이었다, 강력범죄:  $R^2 = .10, F(1, 215) = 24.15, p < .001$ ; 재산범죄:  $R^2 = .08, F(1, 217) = 19.58, p < .001$ . 두 가지 중다회귀 분석 역시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두 분석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강력 범죄: 응보적 기준, 1.000; 진화적 기준, 1.077; 도덕적 기준, 1.136; 법률적 기준, 1.286 / 재산범죄: 응보적 기준, 1.000; 진화적 기준, 1.067; 도덕적 기준, 1.244; 법률적 기준, 1.461).

**남여차이**

양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처벌 기준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남여 각각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전체 범죄의 경우,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에 있어서 양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처벌 기준은 응보적 기준이었다,  $R^2 = .13, F(1, 103)$

= 16.00,  $p < .001$ . 이에 반해 여자의 경우에는 양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처벌기준은 도덕적 기준이었다,  $R^2 = .06$ ,  $F(1, 100) = 6.60$ ,  $p < .05$ . 두 가지 중다회귀 분석 역시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두 분석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남자: 응보적 기준, 1.000; 진화적 기준, 1.040; 도덕적 기준, 1.119; 법률적 기준, 1.309 / 여자: 도덕적 기준, 1.000; 진화적 기준, 1.444; 법률적 기준, 2.562; 응보적 기준, 1.261).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양형 수준의 남녀차이 비교에서 비록 양형의 수준에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양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간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자들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양형이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자들은 그 범죄가 도덕적 관점에서 얼마나 비도덕적인가

하는 차원 즉, 도덕적 기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같은 차이가 범죄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기 위해 범죄 유형에 따라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강력범죄의 경우,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에 있어서 양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처벌기준은 응보적 기준이었다,  $R^2 = .14$ ,  $F(1, 105) = 16.79$ ,  $p < .001$ . 이에 반해 여자의 경우에는 양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처벌기준은 도덕적 기준이었다,  $R^2 = .11$ ,  $F(1, 108) = 13.71$ ,  $p < .001$ . 두 가지 중다회귀 분석 역시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두 분석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남자: 응보적 기준, 1.000; 진화적 기준, 1.042; 도덕적 기준, 1.102; 법률적 기준, 1.337 / 여자: 도덕적 기준, 1.000; 진화적 기준, 1.364; 법률적 기준, 1.435; 응보적 기준, 1.120). 이 같은 결과는 강력범죄의 경우, 양형에 있어서 남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았는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여자들은 강력범죄가 얼마나 비도덕적인가하는 판단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역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자의 경우, 양형수준을 유의미하게

표 6.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결과(전체범죄: 성별)

구분	독립변수	$\beta$	$R^2$	$t$ 값
남자	응보	.37	.13	4.00***
여자	도덕	.25	.06	2.57*

\*  $p < .05$ , \*\*\*  $p < .001$

표 7.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결과(강력범죄: 성별)

구분	독립변수	$\beta$	$R^2$	$t$ 값
남자	응보	.37	.14	4.10***
여자	도덕	.34	.11	3.70***

\*\*\*  $p < .001$

표 8.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결과(재산범죄: 성별)

구분	독립변수	$\beta$	$R^2$	$t$ 값
남자	응보	.30	.09	3.30***
여자	응보	.27	.07	2.83**

\*\*  $p < .01$ , \*\*\*  $p < .001$

예측해준 변인은 ‘응보적 처벌 기준’ 뿐이었다,  $R^2 = .09$ ,  $F(1, 110) = 10.91$ ,  $p = .001$ . 즉,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양형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자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양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보적 처벌 기준 뿐이었다,  $R^2 = .07$ ,  $F(1, 105) = 8.03$ ,  $p = .006$ . 두 가지 중다회귀 분석 역시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두 분석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남자: 응보적 기준, 1.000; 진화적 기준, 1.064; 도덕적 기준, 1.185; 법률적 기준, 1.285 / 여자: 응보적 기준, 1.000; 진화적 기준, 1.059; 도덕적 기준, 1.331; 법률적 기준, 1.800).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양형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는 처벌적 기준에 있어서 성차가 있다는 것이다. 즉, 남자들은 전반적으로 응보적 기준, 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만큼 그 대가로 형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응보적 기준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도덕적 기준 즉, 범죄가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얼마나 비도덕적인가하는 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양형에 대한 판단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강력범죄 사건과 재산범죄 사건 즉, 강력범죄 중에서는 살인, 폭행, 그리고 유괴를, 재산범죄 중에서는 절도, 사기, 재물손괴를 제시하고 각 사건에

대한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처벌 목적 중 가장 기본적인 응보적 기준과 범죄 자체에 대한 가치적 판단에 해당하는 진화적 기준, 도덕적 기준, 그리고 법률적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양형판단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치적 기준과 처벌 기준에 있어서는 강력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전체 사건에서 진화적 기준의 경우, 남녀 모두가 약육강식과 같은 힘의 논리로서 범죄를 정당화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지만,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범죄 행위가 진화적으로 정당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도덕적 기준의 경우에서도 남녀 모두 범죄행위가 비도덕적이지만,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보았으며, 응보적 기준에서도 남녀 모두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만큼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범죄행위에 대해 응보적 차원에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경향은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봤을 때, 강력범죄에서는 남녀가 각 기준에 있어서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진화적 기준의 경우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더 범죄행위를 약육강식과 같은 진화적 논리로 정당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기준에서는 뚜렷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황인정, 2007).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들 중 어떤 기준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범죄를 평균했을 때는 응보 기준만이 양형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경향은 남자와 여자 두 성 모두에서 비슷하였다. 그러나 범죄 유형별로 살펴 보았을 때, 그 경향은 차이가 있었다. 즉, 강력범죄의 경우, 여자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기준이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나타났고,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남녀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강력범죄의 경우, 범죄 행위에 부과되는 양형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지만, 한편으로 남자들은 단순히 응보적 관점에 치우쳐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반해 여자들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양형 판단의 메카니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가치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응보적 기준에서 뚜렷한 성차를 보였다. 그러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단지 응보적 기준에서만 성차를 보였을 뿐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아마도 기존 연구들(조은경, 2003; Killias, 1990, Maxfield, 1984)에서 밝혀진 것처럼,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범죄에 더 취약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며,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이 같은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신체적 위해가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진화적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 그리고 응보적 기준 모두에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설명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재산범죄가 단순히 응보적 기준만이 영향을 미쳐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반해, 강력범죄는 도덕적 기준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범죄 유형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여성들이 단순한 재산범죄는 범죄행위 자체에 비중을 두는 응보적 기준만을 고려하는 것에 반해 강력범죄 같은 심각한 범죄는 도덕적 기준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설명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며 명확한 관계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사건 종류와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매우 전형적인 범죄에만 국한시킨 연구였다. 그렇지만, 최근 사회환경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양상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이버 모독죄의 경우, 일부에서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범죄 유형에 대한 가치적 판단들이 관련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명이 모호한 범죄와 같은 경우,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양형판단에 있어서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다양한 가치적 판단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죄 사례들과 다양한 범죄 유형과 더불어 새로운 범죄들에 대한 가치적 판단이나 처벌 목적이 다양할 수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폭을 넓히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강력범죄와 경범죄, 사적 이익과 관련된 범죄와 공적 이익과 관련된 범죄와 같은 분류 틀을 다양화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2009년까지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일반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문성우, 2007; 최석운, 2007). 이 같은 변화는 그 만큼 전문가 집단의 소유물이었던 양형의 문제가 이제는 일반 국민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별이나 처벌의 목적, 범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고려된 요인들을 법률적 측면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양형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사례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별이 중립적이거나, 제한된 수준에서 남성인 경우만에 한정하였다. 그렇지만, 김범준(2007)의 연구나 황인정(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범죄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성별 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 역시 범죄의 양형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판단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 혹은 성별과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형적 범죄 등 보다 성차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처벌의 목적 이론과 관련된 기준 중 응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보적 기준만을 사용한 것은 이 기준이 처벌 목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처벌의 목적에는 응보 이외에 억제, 사회복귀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처벌의 목적에 해당하는 기준들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상관연구 혹은 보다 엄격한 실험 연구들을 통해 양형과 처벌 목적

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발견이나 인과적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들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라는 제한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그렇지만, 최근 시행된 배심제도는 매우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대학생들이 다른 일반인들과 특별히 다르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경험과 시대적 배경을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적 기준을 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범죄 관련 전문가 집단 즉,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교정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병행됨으로써 양형판단과 관련된 보다 정밀한 메카니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역시 본 연구를 일반화 하는데 일정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성차의 문제는 최근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분야이다(Hyde, 2007).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와 양형에 있어서 성차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양형 판단과 성차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가치관, 성격, 사고유형, 그리고 범죄 경험여부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증거 유형, 사회적 관심, 그리고 재판시 사용되는 설득 전략 등 범죄나 재판과 관련 상황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같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보다 현실성 높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다른 연구들(김범준, 2007; 황인정, 2007)에서 지적 되었지만, 본 연구 역시 범죄와 관련된 가치 기준이나 처벌 목적에 대한 기준을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측정 방식의 변화, 예를 들어, 척도의 개발과 같은 연구들이 더불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본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현 (1992). 법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선고목적 선호와 형량결정 과정에 미치는 선고맥락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고재홍 (1991). 잘못, 책임 및 처벌 : 처벌판단에 관한 한 가상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1-21.
- 고재홍 (1994). 가해자 외모와 형량판단간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68-84.
- 고재홍 (1995). 처벌크기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 29-50.
- 고재홍 (1996). 책임판단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 1-20.
- 고재홍, 백상철 (1994). 범죄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의 사용차이. 사회과학연구 6(경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77-88.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 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1-17.
- 문성우 (2007). 비슷한 범죄엔 비슷한 처벌... '법 앞의 평등' 구현. 국정브리핑. 2007년 5월 25일자.
- 박은영 (2007). 범죄자 처벌의 심성모형이 형량 판단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법무 연수원 (2006). 법무백서. 법무 연수원.
- 손철우 (2008). 형벌의 목적과 양형기준의 목적.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보고서.
- 이윤호 (2002). 범죄학 개론. 서울 : 박영사.
- 이재상 (1994). 형벌목적과 양형. 형사정책연구 소식, 26, 2-4.
- 이천현 (2007). 형벌의 본질과 목적-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보고서.
- 전병재 (1996). 법, 도덕, 그리고 윤리. 형사정책연구소지, 36, 2-3.
- 정영일 (2003). 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1-21.
- 최석운 (2007). 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형사정책연구, 18(3), 421-440.
- 최종고 (2005). 법철학, 제2판. 서울: 박영사.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Bowker, L. H. (1978). *Women,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exington, MA: Health.
- Carlsmith, K. M. (2006). The roles of retribution and utility in determining punish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437-451.
- Carlsmith, K. M., Darley, J. M., & Robinson, P. H. (2002). Why Do We Punish? Deterrence and Just Deserts as Motives for Punis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284-299.
- Darley, J. M., Carlsmith, K. M., & Robinson, P. H. (2000). Incapacitation and Just Deserts

- as Motives for Punishment. *Law and Human Behavior*, 24(6), 659-683.
- Darwin, C. (1987). 종의 기원, 해설판 [*The Origin of Species*]. (소현수 역). 서울: 종로서적 (원전은 1859에 출판).
- Drout, C. E., & Gaertner, S. (1994). Gender differences in reactions to female victim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267-278.
- Garofalo, J. (1977). *Public opinion about crime: The attitudes of victims and non-victims in selected cities*. National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Statistics Servic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U. 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 C.
- Goodwin, C. J. (2005). 현대심리학사 [*A History of Modern Psychology*]. (박소현, 문양호, 김문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9에 출판).
- Greenberg, M. S., & Ruback, R. B. (1982). *Social psycholog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Haskell, M. R., & Yablonsky, L. (1983). *Criminology: Crime and criminality*.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Hogarth, J. (1971). *Sentencing as a human proces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Hyde, J. S. (2007).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gende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 259-263.
- Kaplan, J. (1996). *Criminal law*. Boston: Little, Brown.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 97-108.
- Lapsley, D. K. (2000). 도덕 심리학 [*Moral psychology*]. (문용린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Maxfield, M. (1984). The limits of vulnerability in explaining fear of crime: A comparative neighborhood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233-250.
- McFatter, R. M. (1978). Sentencing strategies and justice: Effects of Punishment Philosophy on Sentencing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12), 1490-1500.
- McFatter, R. M. (1982). Purposes of Punishment: Effects of Utilities of Criminal Sanctions on Perceived Appropriat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3), 255-267.
- Moulds, E. F. (1978). Chivalry and Paternalism: Disparities of treat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ester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31, 416-440.
- Newman, G. (1997). 서양형벌사 [*The Punishment Response*]. (이경재 역). 서울: 길안사 (원전은 1985에 출판).
- Siegel, L. J. (2008). 범죄학 이론과 유형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9th ed.)]. (이민식, 김상원, 박정선, 신동준, 윤옥경, 이성식, 황성현 역). 서울: Cengage Learning Ltd (원전은 2007에 출판).
- Streng, F. (1994).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Straftheoretische Grundlagen der Strafzumessung*]. (정현미 역). 형사정책연구. 5(4)(통권 제 20호), 5-25.

1 차원고접수 : 2008. 8. 11.  
심사통과접수 : 2008. 9. 1.  
최종원고접수 : 2008. 9. 25.

## **The Influence of Punishment Goal on Sentencing: Gender Differences**

**Beom Jun Kim**

**Seung Hyuk Choi**

Kyonggi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value judgement and punishment goal on sentencing depending on gender. For this ai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30 students. They sentenced of felony cases(murder, assault, kidnapping) and property crime(larceny, fraud, destruction) and made judgments on their value and punishment goals of those cases. The result shows the strong gender effects in the judgments of the evolutionary and moral value of crime and retribution goals. However,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s in sentencing.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value judgement and punishment goal on sentencing depending on gender. As results, retribution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criterion variable both for men and women. Moreover, the moral value of crime was another significant criterion variable for women in sentencing felony.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difference of sentencing, punishment goal, penal philosophy, gender difference, sentencing.*